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1.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10. 13.
- 제출자: 칠곡군수
- 회부일자: 2020. 10. 15. 회부
- 상정일자: 제2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2020. 10. 21. 상정·심사·의결)

2. 제출설명의 요지

- 제출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 제출이유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과 → 넘김 (안 제1조)
    -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 나. 이환 → (병예)결립 (안 제2조)
    -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
  - 다. 순화양양 → 순화 (안 제3조)
    - 「칠곡군포상조례」 제5조
  - 라. 회무 → (위원회의)사무 (안 제4조)
    - 「칠곡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제5조
  - 마. 통리 → 총괄 (안 제4조)
    - 「칠곡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제5조

바. 내경 → 안지금 (안 제5조)

- 「칠곡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사. 쌍태아 → 쌍둥이 (안 제6조)

- 「칠곡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 제4조, 제6조)

-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 정비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지영)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6. 소수의견: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